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9. 3.

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국 마을자치과)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21호
- 나. 제 출 자 : 운영회의원
- 다. 제출일자 : 2021. 8. 24.
- 라.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구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정의를 통해 동 단위 거점에 대한 규정 정비와 기존에 운영되던 생활권 단위 캠프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자 의원 발의 되었음.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명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 나. 자원봉사캠프 정의에 대한 내용 추가 (안 제2조)
- 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내용
추가 (안 제5조)
- 라. 생활권단위 자원봉사캠프 내용 추가 (안 제13조)
- 마. 자원봉사활동 홍보 문구 및 행사(워크숍) 추가 (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정의를 통해 동 단위 거점에 대한 규정 정비와 기존에 운영되던 생활권 단위 캠프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명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정비
 - 띄어쓰기, 일본식한자어, 통일할 필요가 있는 용어 등의 정비
- 자원봉사캠프 정의에 대한 내용 추가 (안 제2조)
 -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동 단위 봉사 거점 명시
-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내용 추가(안 제6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의 참여시 위원 구성
-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설치 운영·지원에 관한 명시 및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캠프 내용 추가 (안 제13조)
 - 기존 동 단위가 아닌 생활권단위캠프 내용 추가
- 자원봉사활동 홍보 문구 및 행사(워크숍) 추가 (안 제17조)
 - 자원봉사활동 홍보를 강조하고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추가

다.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캠프를 통해 보다 쉽게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센터와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봉사거점을 중요시 하고자 함.
-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센터가 직영 또는 법인이나 민간위탁 운영이 되더라도 지역 가까이에 있는 봉사거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 또한 기존에 동 단위가 아닌 생활권단위에서 운영했던 캠프에 대해 자연소멸시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동 단위 캠프와 생활권단위 캠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상위법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¹⁾하여 주민들이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됨.

붙임 1. 관련 법령 1부.

1)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법제처) 정비 원칙(p16~17) : 한글로표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 일반 한자어의 순화,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 외래어, 어문규정의 준수 등에 맞게 조문 정비

관련 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약칭: 자원봉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